

【원고, 상고인】 ○○○○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4. 선고 2003누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 12. 27. 원고가 추진하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을 원고에게 교부함에 있어, 보조금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 역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교부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가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결정을 취소한 다음 보조금을 반환조치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취소권(철회권)을 유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단체를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피고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주단체에 세대당 5,497,000원씩 합계 439,760,000원의 보조금을 배정한 후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보조금을 위 아파트의 건축비로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전액 위 아파트의 건립에 사용되었으며, 배정된 보조금 중 나머지인 88,000,000원 만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의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대부분의 세대가 이 사건 사업주단체 등에 의하여 일반인들에게 임대되어 일반인들이 이를 점유, 사용하게 되었고, 그 뒤 이 사건 사업주단체들은 부도와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해체된 사실, 피고는 2001. 10. 26. 이 사건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준공전 불법임대, 아파트 부지 및 진입도로 소유권 미확보 등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 및 교부조건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위 보조금 반환을 원고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위 아파트 건축비로 사용함은 물론 그 준공 후에도 위 아파트를